



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

환경부는 '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'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'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(안)'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.

● 환경부 ●

- 환경부는 최근 「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(위원장 : 환경부 차관, 이하 '실무위원회')」를 개최하고, 향후 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기본계획(안)에 대하여 논의했다.
-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향후 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,
-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 실무위원회는 관계 중앙부처, 3개 시·도,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, 기본계획(안)에 대한 사전 조정 및 논의를 실시하게 된다.
- 동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「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(안)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2014년까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를 주요 선진국 수준(파리, 동경)으로 개선
- 3개 시·도에 대기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4가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 할당
-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선진국

-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, 저공해 자동차 보급, 경유차에 대한 배출저감장치 부착·저공해 엔진 개조 및 노후차 조기폐차, 환경지역 지정 및 교통혼잡세 부과 등 환경친화적인 교통 수요관리방안 도입 검토 추진
- 사업장 관리 수단으로 2007년부터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 실시, 중·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,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및 기술적·재정적 지원 확대 추진
- 지역난방 및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, 신·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, 저항유 공급 확대 및 바람통로를 활용한 개발 계획 수립 추진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·도시 관리
- 기본계획(안)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향후 10년 동안 총 7조 3천억원 소요 전망
- 환경부에서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(안)에 대하여 관계부처, 3개 시·도 및 관련 전문가들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하고, 7월말까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「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위원회」에 상정하여 기본계획(안)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.

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(안) 주요 내용

1. 개요

□ 목표

- 미세먼지(PM₁₀)와 이산화질소(NO₂) 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 관측이 가능한 시정거리 확보

오염물질	2001	2014
미세먼지(μg/m ³)	65	40(39%↓) 동경수준
이산화질소(ppb)	37	22(41%↓) 파리수준

□ 대기환경 관리 지역 : 서울, 인천, 경기 24개시

- ※ 충청권 발전소는 우선 자발적 협약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고, 기본계획 성과 평가 후 관리권역에 포함여부 결정

□ 관리대상 오염물질 : PM₁₀, NO_x, VOCs, SO_x 등 4개 물질

2. 지역배출허용총량제 도입

구분	SO _x	NO _x	PM ₁₀	VOC
2001년 배출량(톤)	70,188	309,387	14,681	262,479
2014년 배출허용총량(톤/년)	43,025	145,412	8,999	160,900
2001년 대비 삭감률(%)	38.7	53.0	38.7	38.7

-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체 대기환경 용량을 설정한 후 각 지역의 배출량 비율에 따라 목표 년도('14년)의 지역배출허용총량 할당
- 시·도에서는 목표 년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바탕으로 매 연도별 지역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여 세부 시행계획 수립·시행

3. 주요 대책

가. 자동차 관리 대책

□ 제작 자동차 관리

-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'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
- 2014년까지 40만대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
 -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보급 목표 제시, 저공해 자동차 보급 실적 평가 후 저공해 자동차 구매 의무대상 확대
- 제작자 환경등급 표시제 도입, 결합확인 검사제도 강화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내구성 향상 및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유도

□ 운행 자동차 관리

- '06년부터 정밀검사 대상 차량을 확대하고 불합격 차량은 인증업체로 하여금 정비를 받도록 함
-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, 기준 불만족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·저공해 엔진 개조
- 휘발유, 경유 및 LPG의 연료 품질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('06년, '10년)

□ 교통 수요 관리

-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환경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자동차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
- 또한, 교통량 집중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교통혼잡세를 부과하여 자동차 통행 억제 유도
- 서울외곽 도시에서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급행 광역버스 확대 및 수도권 광역전철 확충
- 자전거 도로·보관시설의 확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

나. 사업장 관리 대책

□ 대형 사업장 총량관리

-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엄격 관리

- 및 배출권 거래제 시행
-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확대('07.7월 : 1종 → '09.7월 : 3종 사업장)

-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발생 억제
 -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을 제한하여 도장과 정에서 배출되는 VOC 삭감
 - 2007년부터 수도권 모든 주유소에 Stage-II 보급
 - 도장시설 및 세정시설에 대한 VOC 비산 배출관리기준 마련

-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소형 소각시설 관리 강화
 -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및 먼지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
 - 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지도·점검 강화
 - 불법 노천소각을 줄이기 위한 민·관 합동 감시체계 구축

- 비산먼지 관리 강화
 - 도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도입으로 공기중으로 재비산 되는 먼지 저감
 - 토사 운반차량의 흙먼지 발생 단속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·점검 강화

-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
 -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대기 방지시설 운영·개선 등에 대한 시설 진단 및 기술 지원 수행
 - 탈황시설, 탈질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에 대해 융자 지원 확대

다. 환경친화적 에너지·도시 관리

- 지역 난방 및 구역형 집단 에너지 보급 확대
 - 14년까지 90만호에 지역난방 에너지를 보급하고, 상업 및 공공기관 난방시설의 10%를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으로 대체
 - 2014년까지 10만가구(전국)에 가정용 태양광을 보급하고 바이오디젤 등 수송부문

- 대체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
-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실내난방 조절규범을 준수토록 하고 '14년까지 현재 29개소에 불과한 친환경건축물을 404개소까지 확대
- 바람통로를 활용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및 개발사업에 대한 대기환경평가 강화

4. 투자소요

- 2014년까지 3개 분야에 총 7조 3천억원 소요예상

(단위 : 억원)

구 분	투자소요	비 고
총 계	72,578	
저공해 자동차 보급(5개 사업)	16,365	전기 하이브리드·연료 전지 자동차 보급,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
운행차(경유차) 저공해화(5개 사업)	45,238	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, 저공해 엔진 개조, 노후차 조기폐차 등
사업장 및 기타(10개 사업)	10,975	TMS 부착, 저녹스 버너 설치 등

- 기본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
 - 현재 교통시설에만 사용하고 있는 교통세 중 일부를 '07년부터 대기환경개선 사업에 투자
 -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환경세 도입 추진

5. 개선 효과

-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피해 저감
 - 대기오염(미세먼지)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수도권 특별대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약 13,000명 정도 감소 전망

-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저감
 -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'01년도 연간 10조 6천억원에서 '14년에는 5조 7천억원으로 약 4조 8천억원 정도 감소 전망